



유권자 정보 팜플렛



PATRICE Y. LATTIMORE 시 서기가 편집함

★ 총시선거 ★
2026년 11월 3일 화요일

**선거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문의는 1-888-873-1000**

**Los Angeles시에서는 영어뿐 아니라 다음
언어로도 유권자 정보를 지원합니다.**

**Այս բրոշյուրի հայերեն օրինակն ստանալու համար
զանգահարեք 1-888-873-1000 հեռախոսահամարով:**

**要索取本手冊的中文版・
請致電 1-888-873-1000**

**برای تهیه‌ی نسخه‌ای از این جزوه به زبان فارسی، با شماره تلفن
1-888-873-1000 تماس بگیرید**

**हिन्दी में इस पैम्फलेट की प्रति प्राप्त करने के लिए,
1-888-873-1000 पर फोन करें**

**このパンフレットの日本語版をご希望の方は、
1-888-873-1000までお電話ください。**

**ដើម្បីទទួលបានឯកសារថតចម្លងមួយច្បាប់ពីកូនសៀវភៅនេះជាភាសាខ្មែរ
សូមហៅទូរស័ព្ទលេខ 1-888-873-1000**

**이 팸플릿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다음 전화번호로
연락하십시오. 1-888-873-1000**

**Для получения копии данной брошюры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позвоните по номеру 1-888-873-1000.**

**Para obtener una copia de este folleto en español,
llame al 1-888-873-1000**

**Para makakuha ng kopya ng pamphlet na ito sa Tagalog,
tumawag sa 1-888-873-1000**

**เพื่อขอสำเนาจุลสารนี้ในภาษาไทย โปรดโทรศัพท์ติดต่อที่หมายเลข
1-888-873-1000**

**Muốn có một tập sách này bằng tiếng Việt, hãy gọi số
1-888-873-1000**

목차

	페이지
투표지 요약	3
투표 법안, 주장 및 본문	
헌장수정안 제 SC 호	4

유권자 안내

Los Angeles 카운티 등기 등록국/카운티 사무국은 Los Angeles 시의 시 선거 관리 기관입니다.

본 팜플릿은 Los Angeles 통합교육구 (LAUSD) 의 2026년 11월 3일 총선거에 대한 투표 법안 정보만을 담고 있습니다.

투표소와 같은 선거에 관한 정보는 LA 카운티 (800) 815-2666번으로 문의하시거나 해당 웹사이트 www.lavote.gov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는 Los Angeles 통합교육구 (LAUSD) 투표 법안의 간소화된 버전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정보를 비롯한 법안의 전문은 투표지 요약 이후에 인쇄되어 있습니다(목차 페이지 참조).

제목:

교육위원회 선거 관련 선거 자금 규정.

논점:

Los Angeles 시 헌장을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선거의 선거 자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로 변경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현황:

현행 헌장에는 교육위원회 후보자를 위한 선거 자금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헌장에는 시장 후보자를 위한 선거 자금 규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규정은 매우 유사하지만 헌장의 서로 다른 부분에 있습니다.

제안:

이 법안은 반복적인 표현을 삭제하고 특정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시장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선거 자금 규정을 교육위원회 후보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안은 시의회가 조례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채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찬성 투표의 의미는:

유권자는 헌장에서 반복되는 문구를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후보자의 선거 자금 규정을 명확히 하며, 시의회가 조례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채택하도록 허용하기를 원합니다.

반대 투표의 의미는:

유권자는 헌장에서 반복적인 문구를 삭제하거나, 교육위원회 후보자의 선거 자금 규정을 명확히 하거나, 시의회가 조례로 추가적인 변경 사항을 채택하도록 허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Los Angeles 시 헌장을 개정하여 교육위원회 선거의 선거 자금 규정을 명확히 하고, 조례로 변경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공정 요약

SHARON M. TSO, 수석 입법 분석관 작성

시 헌장 섹션 803은 Los Angeles 통합 교육구 교육위원회 후보자들이 선거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선거 자금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 헌장 섹션 470 및 471과 Los Angeles 시 조례 9.7조는 시장 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선거 자금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들은 1974년 California 정치 개혁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의 선거 자금 규정은 유사하지만, 시 헌장과 Los Angeles 시 조례의 서로 다른 부분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시 헌장 섹션 803의 반복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교육위원회 후보자가 시 헌장 섹션 470 및 471, 그리고 Los Angeles 시 조례 9.7조에 명시된 시장 후보자의 선거 자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위원회 후보자의 선거 자금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시장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교육위원회 후보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되, 시장직과 같은 시 선출직 후보자에게만 적용되는 조항 및 시 계약업체와 로비스트의 기부금 제한 조항은 제외합니다.

이 수정안이 승인되면 교육위원회 후보자와 시장 후보자 모두에 적용되는 기존 선거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후보자와 기부자는 기부 한도의 제한을 받게 되며, 이 한도는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직책에 대한 기본 한도는 \$1,000로 유지되며, 후보자가 개인 자금을 선거 운동에 기부하는 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 재무 및 재정 책임 요건에는 교육, 제출 기한, 공개 정보, 감시 대상 선거 자금 계좌 및 소액 현금 자금 등이 포함됩니다.
- 모금 가능 기간과 해당 기간 내에 수령한 자금의 허용 가능한 사용 용도를 포함하여, 기부금 및 지출에 대한 시간적 제한
- 시 윤리위원회의 감사 및 조사 권한에는 형사 및 민사 집행 조항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조례로 추가적인 제한이나 예외 사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법안은 유권자의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적 영향 보고서

MATTHEW W. SZABO, 시 행정관 작성

이 법안은 Los Angeles 통합교육구 (LAUSD) 교육위원회의 기존 선거 자금 규정을 수정하여 Los Angeles 시의 시장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을 교육위원회 후보자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LAUSD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기부금 및 모금에 관한 특정 조항(섹션 470(c)(11) 및 470(c)(12)), 공공 매칭 펀드에 관한 조항(섹션 471) 및 조례로 달리 면제되는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이 법안은 시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장수정안 제 SC 호에 대한 찬성론

현장수정안 제 SC 호에 찬성투표를 해 주십시오

Los Angeles는 Los Angeles 통합교육구 (LAUSD) 교육위원회 후보자들이 기부금 한도, 기부자 공개, 시 윤리위원회의 감독 등 선거 자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다른 선출직 공직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Los Angeles 통합교육구 (LAUSD) 교육위원회 후보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차이점은 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시 현장에서 해당 규정이 어디에 명시되어 있는지에 있습니다. 현재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은 시 현장의 별도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등 다른 선출직 후보자를 규정하는 현장 조항에 포함되지 않고, 별도의 항목으로 등장합니다.

현장수정안 SC는 현장을 간소화하고 관료주의적 비대화와 중복을 줄이는 바람직한 거버넌스 개혁입니다. 이 수정안은 교육위원회 선거에 대한 중복된 선거 자금 규정을 없애고, 교육위원회 후보자들이 시장 후보자들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일반 선거 자금 체계를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명확하고 바람직한 정부 개혁이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지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현장수정안 제 SC 호에 찬성투표를 해 주십시오.

현장수정안 제 SC 호에 대한 찬성론 서명자

ADRIN NAZARIAN

Los Angeles 시의회 의원, 제 2 선거구

NICK MELVOIN

LAUSD 위원회 위원

DIEGO ANDRADES

전 현장개혁 위원

CALIFORNIA COMMON CAUSE

LEAGUE OF WOMEN VOTERS OF

GREATER LOS ANGELES

본 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서술된 주장은 작성자의 의견이며, 시 관련 기관에서 정확성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서명자 이름 아래의 직함은 신원 확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해당 개인이 조직을 대표하여 서명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장에 새로 추가된 조항이나 문구는 밑줄로 표시하며, 기존 현장에서 삭제된 단어는 취소선으로 표시한다.

현장 수정안 제 SC 호
(LAUSD(Los Angeles 통합교육구) 선거에 관한 선거운동 자금 규정)
제안된 투표 법안 본문

제1조. Los Angeles 시 현장 제803조,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제 803조. 위원회 위원 선거.

Los Angeles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는 현장 제400조부터 제440조 및 현장과 일치하는 관련 조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위원회 선거 후보자에게 개인이 기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어 정치 과정에 대한 폭넓은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시장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선거자금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제470조 및 제470조(c)항 또는 현장의 기타 조항에 따라 채택된 조례(해당되는 경우)가 포함되나, 단,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제470조(c)(11)항 및 제470조(c)(12)항의 기부 및 모금 관련 규정, 제471조의 공공 매칭 기금 관련 규정, 그리고 조례안에 의해 예외로 정해진 규정은 적용받지 않는다. 다음의 선거자금 관련 조항은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에 적용된다. 이 조항은 1974년 정치 개혁법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a) 정의.

(1) “요청된”은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며,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A)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가 지시한 지출은 독립적인 지출이 아니며, 해당 지출을 지시한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대한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지급이 요구된다:

(i) 후보자, 위원회 또는 후보자나 위원회 대리인의 요청이나 제안에 따라;

(ii) 후보자, 위원회 또는 후보자나 위원회 대리인과 협력하거나 이들과 협의하여; 또는

(iii) 후보자, 위원회 또는 후보자나 위원회 대리인 간의 약정, 조정 또는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경우.

(B)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에 제한이 없다.

(i) —지출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제작 또는 디자인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여하는 것(콘텐츠에 대한 지출자와 후보자 간의 협의 포함);

(ii) 지출자가 해당 홍보 활동에 사용할 자료를 요청하거나 후보자가 해당 자료를 제공하거나, 후보자가 해당 홍보 활동에 특정 자료를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경우; 또는

(iii) 의사소통에 사용되는 자료의 준비를 위해 후보자와 협의하는 경우.

(C) 다음과 같은 경우 지출이 지시에 의한 것이며 따라서 독립적이지 않다는 반박 가능한 주장이 존재한다.

(i)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구성원의 대리인이 현재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ii) 해당 지출이 이루어지는 선거 주기 동안 지출자 또는 지출자의 대리인과 지출이 이루어지는 후보자 모두 동일한 개인 또는 단체를 고용하여 비행정적, 선거 관련 전문 서비스(비행정적, 선거 관련 전문 서비스에는 여론 조사 또는 기타 선거 조사, 미디어 컨설팅 또는 제작, 직접 우편 컨설팅 및 모금 활동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음)를 제공받는 경우;

(iii) 해당 지출이, 해당 후보자, 위원회 또는 대리인이 기획·제작·비용을 부담하거나 배포한 방송, 서면, 그래픽 또는 기타 형태의 선거운동 자료를 전체 또는 상당 부분 복제, 재생산, 재게시, 배포 또는 전파하는 홍보 활동에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iv) 지출이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후보자의 선거 운동 계획, 프로젝트 또는 필요에 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하거나, 해당 후보자,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지출자 또는 지출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한 정보로서, 지출이 고려되고 있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이해가 있는 경우;

(v) 지출자 또는 지출자의 대리인이 지출자가 자금을 지원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 시기, 위치, 방식, 대상, 배포량 또는 게재 빈도에 대해 지출자가 선거 또는 지명을 지지하거나 지출자가 상대방의 패배를 지지하는 후보자와 논의하거나 협상하는 경우;

(vi) 지출이 이루어지는 선거 주기 동안 지출자 또는 지출자의 대리인이 후보자의 선거 운동에서 공식적인 경영, 정책 결정 또는 자문 직책을 맡고 있거나 맡았거나, 후보자의 지명 또는 선거와 관련된 전략 또는 정책 결정 논의에 참여했으며, 후보자가 해당 지출이 영향을 미치려는 후보자의 지명 또는 선거와 동일한 직책을 추구하고 있는 경우;

(vii) 후보자,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이 후보자를 대신하여 지출을 요청한 후 지출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viii) 해당 지출이 후보자와 지출자 또는 지출자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주최한 모금 행사나 선거 운동 활동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결과로 발생한 경우.

(D) 다음의 경우에만 지출이 요청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i) 지출자 또는 지출자의 대리인이 후보자와 입법 또는 정책 입장에 대해, 혹은 지출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면담을 하거나, 공약, 여론조사 정보, 후보자를 지지하는 단체와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또는 후보자가 고용할 예정인 자문위원의 신원 등 선거 운동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경우. 단,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후속 지출을 하기 전에, 지출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해당 지출과 관련하여 후보자,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과 소통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한다;

(ii) 지출자가 후보자,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으로부터 사진, 약력, 입장문, 공식 발표 또는 이와 유사한 자료를 요청 및/또는 입수한 후, 후보자,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또는 그 대리인의 사전 인자, 통제 또는 관여 없이, 해당 정보를 활용하여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상대 후보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iii) 기부자가 해당 후보자에게 이전에 기부한 적이 있는 경우;

(iv) 지출자가 후보자,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게, 본 조항 (C)(v)호에 언급된 어떠한 사항도 논의하지 않은 채 독립 지출을 할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

(v) 지출을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자원봉사 형태로 개인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근무하는 경우. 단, 해당 자원봉사자나 선거운동원이 지출 단체의 정치 활동위원회 활동에도 참여했거나 지출 단체를 대신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또는 본 조항 (C)(vi)호에 명시된 직책 중 하나를 맡아 해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한 적이 있는 경우;

(vi) 해당 지출이 정당 지도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위원회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후보자와 관련된 지출을 해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

(vii) 해당 지출이 후보자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정치 조사를 실시하는 데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경우; 또는

(viii) 지출자가 과거에 특정 후보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정치 컨설턴트나 여론조사 전문가를 고용하거나 그와 계약을 맺고 있는 경우.

(2) “교육위원회 사무실”이란 Los Angeles 통합교육구 교육위원회 위원의 사무실을 의미한다.

(3) “후보자 또는 위원회 대리인”이란 후보자를 대신하여 지출하거나 그 지출을 승인할 수 있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다음의 자들이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반증 가능한 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후보자 통제 위원회의 현직 또는 전직 임원, 선거운동 직원, 선거운동으로부터 보수나 경비 보상을 받은 자, 또는 선거운동 조직 내에서 선거운동 관련 활동의 통상적인 과정에서 지출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직위에 배치된 자. 또한, 후보자의 대리인에는 보수를 받든 받지 않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에서 자문, 의사결정 또는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사람 중, 그 사람의 직무 및/또는 행동이 후보자의 선거운동 전략, 계획 또는 필요 사항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반영하거나 그러한 지식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4) “선거”란 예비 지명 선거, 총선거, 보궐선거 및 소한 선거를 말한다.

(5) —“독립 지출”이란, 명확히 식별된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명시적으로 옹호하거나, 전체적으로 및 문맥상 볼 때 선거에서 특정 결과를 모호함 없이 촉구하는 홍보 활동과 관련하여 어떤 사람이 행한 지출을 말하며, 해당 후보자나 위원회에게 또는 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닌 지출을 의미한다.

(6) “대출”이란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과 같이 정의되고 취급된다.

(A) 대출금은 대출 제공자와 보증인의 출자로 간주하며, 본 조의 출자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B) 상업 대출 기관이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일반 대중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후보자에게 제공한 대출금 중 담보 또는 보증이 설정된 경우, 해당 대출금은 이 조항의 기부 한도 규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C) 30일 초과 기간에 대한 신용 제공(제(6)(B)호에 언급된 대출을 제외함)은 본 조의 기여 한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7) “회원 지급금”이란 정부법 제853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A) 이 조항의 목적상, 후보자가 요청한 회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불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뉴스레터 또는 정기 간행물을 발행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불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개인 회원에게만 한정된 정기 뉴스레터 또는 정기 간행물에 대한 지불을 제외하고, 이 조항에 포함된 기부 한도 보고 요건의 목적상 해당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에 대한 기부로 간주된다.

(B) 이 조의 목적상, 후보자,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또는 후보자나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의 대리인이 요청하지 않은 당원과의 소통은 후보자에 대한 기부로 간주하지 않는다.

(C) 후보자, 후보자 통제 위원회, 또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의 대리인이 요청한 것이 아니며, 개별 당원에게만 한정된 정기 간행물이나 정기 간행물에 대한 대가가 아니며, 정기 간행물이나 정기 간행물 발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는 지출로 간주하며 부속 조항 제(s)항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8) “비후보자 지출”이란 후보자의 요청에 의하지 않은 독립 지출 및/또는 당원 대상 홍보 활동의 모든 조합을 의미한다.

(b) 선거운동 기부금 한도.

(1) 교육위원회 후보로 출마할 의사가 있는 자 및 해당 후보를 대리하여 활동하는 위원회는, 해당 직책에 대한 선거에 사용될 어떠한 기부금도 요구하거나 수령하거나, 요구되거나 수령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단, 해당 후보자가 특정 교육위원회 직책 출마와 관련하여 기부금 요구 및 수령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해당 신고서는 시 윤리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시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가 실시되면, 그 선언은 그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누구도 단일 선거에 대해 두 개 이상의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는 한 건의 신고를 취소하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후 새로운 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2) 후보자와 후보자 통제 위원회의 재무국장들은 시 윤리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후보자와 재무국장들이 제803조를 읽고 이해했음을 확인하는 선서 진술서를 시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성명서는 기부금 모금 및 수령 의향서의 제출과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3) 누구도 단일 선거에서 교육위원회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 통제 위원회에 총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해서는 안 된다. 교육위원회 후보자는 단일 선거에 대해 누구로부터든 총액 1,000달러를 초과하는 기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후보자가 교육위원회 출마를 위해 개인 자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4) [폐지됨.]

(5) 누구도 교육위원회 직책에 대한 단일 선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에 기재된 교육위원회 직책 수에 1,000달러를 포함한 금액을 초과하는 총액에 달하는 기부금을 기부해서는 안 되며, 단, 어떠한 경우에도 해당 선거에서 모든 교육위원회 직위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와 관련하여 총 기부액이 2,000달러 미만이어서는 안 된다. 다만, 후보자는 자신의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기부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금액에 있어 본 제5호에 따른 제한을 받지 않는다.

(6) 누구도 교육위원회 선거와 관련하여 1,000달러를 초과하는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또한 누구도 또는 후보자도 그러한 대출을 요청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된다. 또한, 누구도 교육위원회 공식 선거와 관련하여 30일을 초과하는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누구도 또는 후보자도 그러한 대출을 요청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 위원회에 대한 대출은 해당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기부 한도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후보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대출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정상적인 영업 과정에서 인가받은 금융 대출 기관으로부터 금액에 관계없이 개인 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 위원회에 대한 모든 대출은 서면 계약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계약서는 대출이 최초로 보고된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선거운동

성명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 이 제6항은 후보자가 자신의 선거운동에 제공하는 대출의 금액이나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7) 이 조항에 따라 모금하거나 수령한 모든 기부금은, 후보자가 제출한 기부금 모금 및 수령 의향서에 명시된 공직 출마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특정 개인을 위해 모금되거나 수령된 기부금은, 다른 교육위원회 직책을 추구하는 다른 개인의 임후보에 사용되거나, Los Angeles 통합교육구 투표 법안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후보자, 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 또는 선출직 교육위원회 위원인 기부받은 자금을 사용하여 공직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나 공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에 어떠한 기부도 해서는 안 된다. 단, 후보자는 자신의 개인 자금을 사용하여 자신의 임후보, 다른 후보자의 임후보, 또는 Los Angeles 통합교육구 투표 법안에 대한 지지나 반대를 목적으로 기부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다.

(c) 한도 조정. 시 윤리위원회는 매 4년마다, Los Angeles-Long Beach 대도시 통계 지구의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이 섹션에 포함된 기부 한도액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첫 번째 검토는 2011년 역년 말에 시작되어야 한다. 어떤 검토 기간에도 기여금 한도가 조정되지 않은 경우, 해당 한도는 다음 4년 검토 기간에 지난 조정 이후 CPI의 누적 상승폭을 상한으로 하여 조정될 수 있다. 기부 한도에 대한 모든 변경 사항은 부속 조항 (q)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모금 기간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이후의 모든 선거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시 윤리위원회는 각 검토가 끝난 후 3월 1일까지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시 윤리위원회가 시의회에 보고서를 이송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의회는 해당 사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보고서를 승인하거나 기각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의회가 60일 이내에 승인하지 않을 경우, 그 보고서는 승인 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상정되며, 시의회에는 시장의 거부권을 재의결할 수 있도록 상정된다. 시장이 승인하거나, 시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시의회가 시장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고 승인하는 경우, 해당 보고서에 명시된 금액은 본 조항에 적용되는 기부 한도로서 법적 효력을 가지며, 본 조항에 규정된 모든 제재 및 구제 조치의 적용을 받는다.

(d) 현금 기부 및 익명 기부. 누구도 25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기부금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후보자나 위원회는 25달러를 초과하는 현금 기부금을 요청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 단일 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나 위원회에 대한 익명 기부금의 총액이 2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기부금이 의도된 후보자나 위원회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대신 초과분은 시 재무국장에게 지체 없이 납부하여 시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e) 선거운동 기부금 예치 계좌.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 한 명당, 그리고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각 위원회는 선거운동 기부금 입금용 당좌 예금 계좌를 한 개만 개설할 수 있다. 해당 계좌는 Los Angeles 시에 위치한 은행 또는 저축 대부기관의 지점에 개설되어야 한다. 해당 계좌를 개설한 후, 후보자는 선거운동 은행 계좌 개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시 윤리위원회에 은행 또는 저축 대출 기관의 명칭과 계좌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좌에서 자금을 지급할 때는 후보자, 재무국장 또는 재무국장이 지정한 대리인이 서명한 수표로만 지급해야 한다. 후보자, 재무국장 또는 재무국장이 지정한 대리인은 교육위원회 선거와 관련하여 수령한 모든 기부금을 선거 운동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교육위원회 선거와 관련된 모든 선거 운동 경비는 후보자, 재무국장 또는 재무국장이 지정한 대리인이 선거 운동 당좌예금 계좌의 자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후보자가 다른 통제 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해당 위원회가 당좌예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후보자는 시 윤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해당 위원회와 은행 또는 저축대출기관의 명칭 및 주소, 그리고 해당 계좌의 계좌번호를 통지하여야 한다. 후보는 기금 모금 및 수령 의향 신고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시 윤리위원회에 해당 위원회, 은행 또는 저축대부 기관 및 계좌 번호를 신고해야 한다. 그 후 위원회가 구성되거나 계좌가 개설되는 경우, 후보자는 시 윤리위원회 사무실이 업무를 보는 다음 정규 영업일에 시 윤리위원회에 이를 통보해야 한다. 어떠한 기부금도 후보자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자금과 혼합해서는 안 된다.

이 부속조항은 저축예금이나 정기예금의 개설을 금지하지 아니하되, 해당 계좌에서 선거운동 자금을 지출해서는 안 된다.

(f) 재무국장. 교육위원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위원회를 둔 후보자는 각 위원회의 재무국장을 임명해야 한다. 재무국장 또는 그 지정 대리인의 승인 없이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대신하여 어떠한 지출도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재무국장 직위에 공석이 있는 기간에는 위원회 또는 위원회를 대리하는 자에 의해 어떠한 기부금이나 지출도 수령하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와 재무국장은 해당 지급을 승인 및 허가하고, 그러한 승인서, 상세한 회계 장부, 기록, 청구서 및 영수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g) 후보자 및 재무국장을 위한 교육. 교육위원회의 모든 후보자와 해당 후보자 통제 위원회의 모든 재무국장은 후보자의 이름이 투표지에 표시될 선거 전에 시 윤리위원회가 실시하거나 후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해야 한다.

(h) 책임성. 후보자와 재무국장은 선거 자금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상세한 회계 장부, 기록, 청구서 및 영수증을 보관해야 한다. 후보자 및 재무국장은 개정된 1974년 정치개혁법에 명시된 기간의 상세한 회계 장부, 기록, 청구서 및 영수증을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후보자와 위원회는 이 조항을 집행할 법적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요청할 경우, 해당 후보자가 관리하는 각 위원회의 감사 내역 및 재정 장부, 그리고 이러한 내역을 입증하는 모든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i) 소액 현금 기금. 부속 조항 (e)항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선거운동 재무책임자 및 선거운동 기부금 당좌예금 계좌에서 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있는 기타 지정 대리인은, 해당 당좌예금 계좌를 개설한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소액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당 5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해당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다.

(j) 가명 기부. 법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명칭과 다른 명칭으로 공동으로 행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혹은 다른 개인 또는 단체의 명칭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해서는 안 된다. 누구도 타인의 소유물이나 타인으로부터 기부금으로 사용될 것을 조건으로 받은 물품을 자신의 명의로 기부해서는 안 된다. 후보자 또는 위원회 재무국장이 본 부속조항을 위반하여 기부금을 수령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재무국장은 본 부속조항을 위반하여 수령한 금액을 지체 없이 시 재무국장에게 납부하여서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k) 선거운동 지출 -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통제하지 않는 지출. 후보자 또는 위원회의 통제를 받지 않으나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독립적인 지출을 하는 개인

또는 조직은 발행, 개시 또는 방송되는 모든 자료에 해당 자료가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통제하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음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l) 소환 청원. 소환 청원이 제출될 경우, 청원을 제출한 위원회 또는 개인은 교육위원회 후보자에게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선거 자금 공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m) 재화 및 용역-기록 공개 의무. 교육위원회 위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위원회에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와 용역 모두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해당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재화나 용역, 또는 재화와 용역 모두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내역 및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을 사 윤리위원회 또는 이 조항을 집행할 법적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고의로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n) 자금의 합산. 이 섹션에 포함된 기부 한도액의 목적상, 아래에 나열된 상황 중 어느 하나라도 적용되는 경우, 2인 이상의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은 합산되며 이 섹션에 포함된 기부 한도액 및 보고 조항의 목적상 단일 개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된다.

(1) 특정 개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액을 해당 개인의 기부 또는 지출 활동을 통제하는 다른 개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액과 합산하는 경우;

(2) 정부법 제82048.7조에 정의된 후원 위원회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을 해당 위원회를 후원하는 단체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과 합산하는 경우;

(3) 특정 법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을 각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를 차지하는 개인이 동일한 다른 법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과 합산하는 경우;

(4) 특정 법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을, 동일한 임원을 두고 있거나 임원의 과반수를 공유하는 다른 법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과 합산하는 경우. 이 항의 목적상, 임원에는 해당 법인의 이사회 구성원으로서만 직무를 수행하는 개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5)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액을 동일한 대주주 및/또는 구성원을 보유하거나 해당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의결권 과반수를 보유한 다른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액과 합산하는 경우;

(6) 법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을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과 합산하되, 해당 법인 중 적어도 하나는 비상장 법인인 경우;

(7) 개인으로부터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을 해당 개인이 50% 이상의 투자를 소유하거나 투표권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으며 아래의 세부조항 (8) 또는 (9)에 기술되지 않은 법인, 유한책임회사, 기업, 합작회사, 신디케이트, 사업 신탁, 회사 또는 기타 사업 실체로부터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과 합산한 경우;

(8) 개인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을 해당 개인이 소유한 개인사업체의 기부금 및/또는 지출과 합산한 경우; 또는

(9) 일반 파트너의 출자 및/또는 지출을, 해당 일반 파트너가 5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의결권의 과반수를 행사하는 일반 합명회사 또는 유한 합명회사의 출자 및/또는 지출과 합산한 경우.

(o) **가족 기여금.** 남편과 아내의 기부금은 별도의 기부금으로 취급되어야 한다. 18세 미만 자녀의 기여금은 부모의 기여금으로 간주되어 각 부모에게 비례적으로 배분된다(각 부모에게 절반씩 또는 양육권을 가진 부모에게 전액 귀속).

(p) **기부금 반환.** 기부금이 수취된 후 14일 이내에 처리, 예치 또는 사용되지 않고 기부자에게 반환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이 수령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q) **기부금 수령 시기 제한.** 교육위원회 후보자 또는 해당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는 후보자가 공직을 구하고자 하는 선거일로부터 18개월보다 더 전에 어떠한 기부금도 요청하거나 수락해서는 안 되며, 요청되거나 수락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위원회 후보자 또는 해당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는 선거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후에는 어떠한 개인으로부터도 자신의 선거운동 위원회로 기부금을 요청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되며, 요청되거나 수령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교육위원회 후보자 또는 해당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가 선거 후에 요청하거나 수령한, 또는 요청되거나 수령되도록 한 기부금은 선거운동 부채를 청산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r) 선거운동 공개, 보고 및 기록 유지.

(1) 개정된 정부법 섹션 81000으로 시작되는 정치 개혁법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선거운동 성명서 외에도, 교육위원회 후보자, 이들의 통제 위원회 및 이러한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는 선거 전 금요일에 선거 전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성명서의 제출 마감일은 선거 전 수요일로 하며, 해당일까지 발생한 활동 및 지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교육위원회 후보자,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 및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주로 구성된 위원회 역시 3월에 실시되는 예비 지명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선거 자금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A) 선거 전 해의 9월 30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성명서를 10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B) 선거 전 해의 12월 31일로 종료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성명서를 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1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2) 기부자의 성명, 주소, 직업 및 고용주가 기부금 수령자의 기록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교육위원회 후보자의 선거 운동 당좌예금 계좌에 기부금을 입금해서는 안 된다.

(3) 각 후보자, 그리고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독립 지출을 하거나 유권자와의 소통을 수행하는 각 위원회는, 200부 이상의 실질적으로 유사한 선거 홍보물을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배포하는 경우, 해당 우편물이나 기타 홍보물을 우체국에 제출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배포하는 동시에 그 사본을 시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선거 운동 기간 동안 위원회는 해당 유세 자료의 보관처 역할만을 수행하며, 그 내용에 대해 판단하거나 논평해서는 안 된다.

(4) 시 윤리위원회에 선거운동 성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교육위원회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의 통제 위원회는, 후보자 및/또는 위원회가 교육위원회 공식 선거와 관련하여 \$25,000 이상의 기부금을 수령하거나 지출을 한 후에는 위원회의 전자 제출 시스템(EFS)을 사용하여 해당 선거운동 성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한다.

(A) 후보자 또는 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선거운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후보자 또는 위원회는 해당 위원회가 공식적으로 해산될 때까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성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온라인으로 제출할 의무가 없는 위원회 및 기타 개인은 자발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B)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하는 사람은 California 주 정치개혁법 및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시 윤리위원회에 선거운동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더 이상 없어질 때까지 각 선거운동 보고서의 종이 사본을 계속 제출해야 한다. 감사 및 기타 법적 목적을 위해 종이 사본은 계속해서 선거 운동 성명서의 원본으로 간주된다.

(C) California 주 정치개혁법 또는 본 부속조항에 따라 종이 사본을 늦게 제출한 경우 부과될 수 있는 지연 제출 과태료 외에도, 본 항의 온라인 제출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자는 온라인 사본 제출 마감일 지난 날부터 하루당 25달러의 추가 지연 제출 과태료가 부과된다.

(D) 온라인으로 제출된 선거운동 성명서에 기재된 정보는 시 윤리위원회에 제출된 동일한 성명서의 종이 사본에 기재된 정보와 동일해야 한다.

(s) 독립적 지출 및 의뢰되지 않은 위원 간 소통에 대한 지급 내역 공개.

(1) 위원회를 포함하여, 교육위원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1,000 이상의 독립적 지출을 하거나 발생시킨 자, 또는 교육위원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이 섹션에서 정의된 회원 통신을 목적으로 총 \$1,000 이상의 1회 이상의 지불을 한 자는, 이 기준액을 충족하는 1회 이상의 지불이 이루어질 때마다 24시간 이내에 인증된 우편, 팩스 또는 이메일로 시 윤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2) 해당 통지는 해당 지출에 의해 지지받거나 반대된 각 후보자, 각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지출된 금액, 해당 후보자가 지지받았는지 또는 반대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지출이 그 지출로부터 혜택을 받은 후보자 또는 후보자들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시하는 선언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진술서는 위증 형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지출을 하는 단체의 해당 개인 또는 임원 및 재무국장이 서명해야 한다. 또한, 지불 날짜 및 금액, 지불이 이루어졌거나 발생한 통신 유형에 대한 설명, 지불자의 이름과 주소, 수취인의 이름과 주소, 우편물 또는 광고 사본, 또는 통화, 전송 또는 광고의 스크립트 또는 녹음 사본도 시 윤리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해당 통지에는 위원회가 위원회에 제출한 마지막 선거자금 공개 보고서 마감일 다음 날 또는 해당 연도 첫날 중 더 늦은 날짜 이후에 받은 100달러 이상의 기부금에 대한 공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Los Angeles 통합교육구 외의 다른 후보자를 위한 기부금은 공개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해당 통지에는 해당인이 해당 연도에 교육위원회 후보자 또는 후보자 통제 위원회에 100달러 이상을 기부한 내역을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3) —시 윤리위원회 직원은 1,000달러 이상의 독립 지출 및 비조직적 회원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지불 통지를 받은 후 영업일 기준 하루 이내에 해당 선거의 모든 후보자에게 전화, 팩스 또는 이메일로 통지한다. 해당 통지서에는 서명된 신고서에 명시된 대로 해당 지출로 인해 지지 또는 반대된 후보자가 명시되며, 지출을 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한 통신문 사본이 첨부된다.

(4) —제(1)호에서 요구하는 신고와 관련하여, 단체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뉴스레터나 정기 간행물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그 배포 대상이 해당 단체의 회원, 직원, 주주, 기타 관련자 및 해당 간행물을 요청하거나 구매한 사람으로 제한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후보자 통제 위원회 및 독립 지출 위원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위원회는, 1,000건 이상의 녹음된 전화 통화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담은 기타 형태의 전자적 전송이나 팩스 전송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출하거나, 교육위원회 위원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한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광고에 1,000 달러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지출하는 경우, 교육위원회 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해당 통신에 사용된 대본 또는 녹음본의 사본을 해당 전화, 전송 또는 광고가 최초로 이루어지거나 방송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t) **검증.** 이 조항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신고서, 보고서 및 진술서는 제출자가 위증 형벌을 받는다는 조건 하에 서명하고 확인해야 한다. 후보자와 이 조항에 따라 선언문, 보고서 및 진술서에 서명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모든 선언문, 보고서 및 진술서의 내용을 읽고, 숙지하며, 이해해야 한다.

(u) **시 윤리위원회의 의무.** 시 윤리위원회는 이 조항의 규정을 집행하여야 한다.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기타 의무 외에도, 시 윤리위원회는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정된 1974년 정치개혁법 및 현장 제7조와 본 조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위원회 공직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및 진술서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실시한다. 시 윤리위원회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조사관을 고용하여야 한다.

(2) —현장 제7조에 따라, 정부법 제90002조(c)항에 의거하여 본 조의 규정을 집행하거나 집행되도록 조치한다.

(3) —본 조항 및 관련 주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사안을 시 법무관 또는 기타 적절한 법 집행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v) 집행.

(1) **형사 집행** - 이 조항의 규정을 고의로 또는 의도적으로 위반한 자는 경범죄로 처벌받는다. 누구든지 고의 또는 의도적으로 타인이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거나, 타인이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을 방조·조장한 경우,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진다. 이 조항의 어느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판결 시 법원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결정하지 않는 한, 유죄 판결일로부터 4년 동안 로바스트 또는 사 계약업체로 활동할 수 없다. 이 조항의 목적상, 불항쟁 답변은 유죄 판결로 간주되어야 한다.

(2) 민사 집행.

(A) 본 조항의 어떠한 규정을 고의 또는 과실로 위반한 자는 사 법무관, 사 윤리위원회 또는 Los Angeles 통합교육구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가 제기하는 민사 소송에 따라 위반 건당 5,000달러 이하의 금액 또는 해당 자가 적절히 신고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기부·제공·수령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진다.

(B) 본 조의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기부금을 제공하거나 수령하거나, 지출을 한 자는 사 법무관 또는 사 내에 거주하는 자가 제기하는 민사 소송에서 불법 기부금 또는 지출 금액의 최대 3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C) 위반 행위에 대해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책임이 있는 경우, 이들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D) 사 법무관을 제외한 누구든지 이 부속 조항에 따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사 윤리위원회에 해당 소송을 개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명서에는 소송 사유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에 대한 진술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 윤리위원회는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민사 소송을 제기할 의사가 있는지를 명시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사 윤리위원회가 이를 인정하고 그로부터 4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 윤리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이 기각되지 않는 한 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 본 부속조항에 따라 어떠한 위반 사항에 관해서도 본안 판결은 1건 이상 받을 수 없다. 동일한 위반 행위 또는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제기된 소송은 재판 순서상 제기된 시기에 따라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이전에 제기된 소송에서 판결이 선고되거나 법원이 화해를 승인한 경우, 해당 소송은 기각되어야 한다. 법원은 원고가 성실하고 신의에 따라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다른 소송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 중인 소송을 기각할 수 있다. 동일한 위반 사항을 근거로 제기된 소송에서 사 법무관 또는 원고 중 어느 한 쪽이 신청할 경우, 해당 소송은 기각될 수 있다.

(F) 이 부속조항에 따른 배상 책임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원은 위반 행위의 심각성과 피고인의 과실 정도를 고려할 수 있다. 소송에서 피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민간 원고는 회수된 금액의 50%를 지급받는다. 나머지 50%는 시의 일반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시 법무관이나 시 윤리위원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해당 금액 전액은 일반 기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G) 이 조항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은 위반이 발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한 후에는 제기할 수 없다.

(H) Los Angeles 시 법무관을 포함한 Los Angeles 통합교육구 내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위반 행위를 금지하거나 본 조항의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금지명령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은 본 조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승소한 기관이 아닌 당사자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수임료를 포함한 소송 비용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단, Los Angeles 시를 상대로는 이러한 비용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없다.

(w) 위반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1) 후보자가 이 조항의 어느 규정을 위반하여 경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해당 위반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법원이 그러한 중대한 영향을 인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A) 해당 유죄 판결이 선거일 이전에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에게 투표된 표는 집계되지 아니하며, 해당 선거의 결과는 해당 선거구에 출마한 다른 후보자들에게 투표된 표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B) 해당 유죄 판결이 선거일 이후에 확정되고, 해당 후보자가 당선된 것으로 선언된 경우, 해당 후보자는 취임할 수 없으며, 해당 직위는 공식으로 간주되고 현장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

(C) 후보자가 취임한 후에 해당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해당 후보자는 직위에서 해임되며, 해당 직위는 공식으로 간주되고 현장에 달리 규정된 바에 따라 충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D) 해당 유죄 판결을 받은 자는 유죄 판결일로부터 5년 동안 시의 선출직 공직 또는 교육위원회 위원직을 맡을 자격이 없다.

(2) 시 서기관은 후보자가 개정된 1974년 정치개혁법에 따라 요구되는 선거 전 선거운동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선거운동 성명서 제출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부법 제84205조에 따라 허용된 서면 선언서를 1974년 정치개혁법에서 정한 형식과 장소에 따라 제출할 때까지는 어떠한 후보자에게도 후보자 지명 증명서나 당선 증명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x) 제출 지연에 따른 과태료. 누구든지 이 조항에서 정한 최종기한이 지난 후에 원본 성명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조항에 규정된 가타 제재나 구제 조치에 더하여, 최종기한이 지난 날부터 해당 성명서나 보고서가 제출될 때까지 하루당 25달러를 사 윤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신고 지연이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며, 해당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해당 조항의 취지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책임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성명서나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떠한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

(y) 분리 가능성. 이 조항의 어떤 규정이나 그 일부, 또는 그 규정의 특징이나 상황에 대한 적용이 법원에 의해 무효로 판정되더라도, 이 조항의 나머지 부분이나 해당 규정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를 제외한 다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해당 규정의 적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조. 분리 가능성. 본 헌장 개정안의 어떤 섹션, 부속 조항,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이 관할 법원이나 재판소에 의해 위헌이나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 본 헌장 개정안의 나머지 섹션, 부속 조항, 단락, 문장, 구 또는 부분은 완전한 효력을 유지하며, 이를 위해 이 헌장 개정안의 조항은 분리할 수 있다. 또한 유권자는 위헌이거나 무효로 판정된 모든 섹션, 부속조항, 단락, 문장, 구, 부분 및 적용이 없더라도 본 헌장 개정안의 모든 섹션, 부속 조항, 단락, 문장, 구, 부분 및 적용 사항을 통과시켰을 것임을 선언한다.

유권자의 권리

유권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습니다

- 1. 유권자가 등록 유권자인 경우 투표할 권리.**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은 투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 ★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 ★ 중죄 유죄선고로 현재 연방 또는 주 교도소 복역 중이 아닌 경우 및
 - ★ 18세 이상
 - ★ 현재 법원에서 투표를 하기 위한 정신적 무능력자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사람
- 2. 등록 유권자인 경우 명부에 이름이 없더라도 투표할 권리.**
유권자는 잠정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합니다. 선거관리 담당관이 투표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는 경우, 유권자의 투표는 집계됩니다.
- 3. 투표소가 폐장되었을 때 여전히 줄을 서있는 경우 투표할 권리.**
- 4. 비밀투표를 할 권리.** 어떤 사람도 유권자를 귀찮게 하거나 투표하는 방법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
- 5. 이미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유권자가 실수를 했을 때 새 투표용지를 받을 권리.**
투표소에서 선거관리 공무원에게 새 투표용지를 달라고 요청하거나,
선거관리 사무소 또는 투표소에서 **우편투표용지를 교환**하거나,
잠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투표할 수 있습니다.
- 6. 투표할 때 도움을 받을 권리,** 유권자가 선택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고용주 또는 노동조합 대표는 제외.
- 7. 작성한 우편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투입할 권리,** 캘리포니아 주에서.
- 8. 영어 이외의 다른 언어로 된 선거 자료를 받을 권리,** 해당 선거구에서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은 경우.
- 9. 선거 절차에 대해 선거 관리 담당관에게 질문할 권리,** 선거 과정을 감시할 권리 포함. 유권자가 질문하는 사람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는 경우, 유권자를 적합한 사람에게 보내어 답변을 제공해야 합니다. 유권자가 방해하는 경우에는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 10. 불법적이거나 사기적인 선거 활동을 신고할 권리,** 선거관리 담당관 또는 총무처장관실로 신고.

이러한 권리가 거부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총무처장관의 비밀 무료 유권자 핫라인 (800) 345-VOTE (8683) 로 전화하십시오.

 웹사이트: www.sos.ca.gov

 전화번호: (800) 345-VOTE (8683)

 이메일 주소: elections@sos.ca.gov

유권자 접근성 정보



접근성 및 기타 보조 장치 (800) 815-2666, 옵션 4 (LA 카운티 핫라인)

LA 카운티 투표소는 휠체어로 출입 가능 및/또는 거리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소 내부에는 귀하의 투표를 돕기 위한 보조 기기가 마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디오 녹음 (213) 978-0444

모든 투표소에서 오디오 장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책자에 포함된 법안의 오디오 녹음은 영어,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제공됩니다. 이 녹음 파일은 저희 웹사이트 clerk.lacity.gov/elections/multilingual-services 와 다음 장소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Braille Institute Library
741 North Vermont Avenue
Los Angeles, CA 90029
(323) 660-3880

Central Library
630 West 5th Street
Los Angeles, CA 90071
(213) 228-7000

유권자는 저희 사무실에 오디오 녹음 사본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Office of the City Clerk-Election Division
Attn: Audio Recordings
555 Ramirez Street, Space 300
Los Angeles, CA 90012



TTD 전화번호 (562) 462-2259

청각 장애인 유권자를 위해 TTD 전화번호가 제공됩니다.



언어 지원 (213) 978-0444

시는 아르메니아어, 중국어, 페르시아어, 힌디어, 일본어, 크메르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태국어 및 베트남어로 된 투표 자료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시.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지역 주민의회!

도로 파손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가요? 지역 사회 미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지역 사회와 의미 있는 방식으로 소통할 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지역 주민의회에 참여하세요!

지역 주민의회는 바로 여러분이 속한 지역 사회 구성원들로 구성되며, Los Angeles 시가 지역 사회의 요구, 과제, 그리고 열망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선출된 자원봉사자 자문 기구로서, 지역 주민의회는 시청에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대변합니다.

지역 주민의회는 Los Angeles 시 정부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시 지도자들에게 자문 제공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옹호 활동,
- 지역 사회 및 자본 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 도로 및 보도 보수, 공공 안전, 쓰레기 수거 등 시 서비스에 대한 모니터링 및 권고 사항 제시,
- 지역 사회의 행사, 프로젝트 및 사업에 자금 지원,
- 그 외에도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Los Angeles에는 99개의 지역 주민의회가 있습니다.

미국 최대 규모의 풀뿌리 시민 참여 모델로 여겨지는 이 프로그램들은 각각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일하거나, 공부하거나, 종교 활동을 하거나, 부동산이나 사업체를 소유하거나,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Los Angeles 시민들을 위해 봉사합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2027년에 지역 주민의회 선거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Los Angeles 시민으로서, 여러분은 지역 주민의회 의원직에 출마하고 이번 중요한 선거에서 유권자로 투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www.99NCs.com을 방문하여 거주 지역의 지역 주민의회를 확인하고 2027년 지역 주민의회 선거에 대해 알아보시거나, 지역주민 수권부에 EmpowerLA@LACity.org 또는 (213) 978-1551번으로 연락하여 문의하십시오.



투표 방법 안내



우편투표

- 우편으로 반송
 - 선거일 당일까지 소인이 찍혀 있어야 하며, 7일 이내에 도착해야 합니다.
- 투표지 제출
 - 투표용지 반납함 장소
 - LA 카운티 투표소

우편투표 봉투 뒷면에 서명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투표 센터

- 직접 투표하기
- 우편투표용 투표용지를 제출하세요



여기를
스캔하십시오!

투표소 운영시간 및 위치를 확인하려면 스캔하십시오

또는 locator.lavote.gov/locations/vc를 방문하십시오

사전 투표하세요!
투표소는
2026년 10월 24일부터 운영됩니다